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 2021 - 196 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,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11. 25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

1. 도로명주소 폐지현황

연번	폐지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사유	비고(해당지번)
1	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31길 6	2021-11-18	건물말소	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00-9
2	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77	2021-11-18	건물말소	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90-4
3	서울특별시 광진구 답십리로84길 6	2021-11-24	건물말소	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552-4
4	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2길 31-2	2021-11-22	건물말소	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9-9
5	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55	2021-11-22	건물말소	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3-7
6	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57	2021-11-22	건물말소	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3-27
7	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77	2021-11-23	건물말소	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16-8
8	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17길 13-7	2021-11-24	건물말소	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61-19
9	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81	2021-11-24	건물말소	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61-26

2. 참고사항

- 도로명주소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 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에만 부여합니다.
-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등의 신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,
- 건물번호판의 제작·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.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(http://www.gwangjin.go.kr)를 참고하시거나 부동산정보과(☎ 02)450-775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